

의안번호	제2889호
의 결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4. 12. 27.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89
----------	------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발 의 자 : 최두임, 우정욱,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원순,
김향숙, 정영환 의원(8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어업작업 ”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59호

- 예고기간: 2024. 12. 27.(금) ~ 2025. 1. 2.(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지원계획)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6. 15.>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

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